

경운대학교 교양교육운영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교양교육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위원회는 벽강교양대학장, 교무처장, 기초교육학부장, 인문창의학부장, 글로벌학부장, 인덕원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벽강교양대학장이 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3. 위원회의 간사는 기초교육학부장이 담당한다.

제3조(임기)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양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
2. 교양 교과과정 개발 및 편성
3. 교양 교육과정의 운영 및 조정, 학사관리
4.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
5. 교양교육 예산의 운영, 조정 및 지원
6. 교양교육 운영에 관한 조사 및 연구
7. 기초교양 인증제(KW인성 인증제) 운영
8. 공동 교양교육(교양 연합교육체계)운영 및 학사관리
8. 기타 벽강교양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5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전문위원회) ① 교양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양교육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교양교과목 운영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각 학부별소위원회(이하 “각 학부교육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③ 평가위원회 및 각 학부교육위원회는 벽강교양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는 학기 중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

집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7조(전문위원회의 기능) 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교양교육 운영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
2. 교양교육 CQI 분석에 관한 사항
- ②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각 학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1. 교과목 운영계획 수립
2. 교과목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
- ③ 평가위원회 및 각 학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.
-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각 학부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벽강교양대학 행정실이 관장한다.

제9조(간사) 각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